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18. 12. .
발 의 자	장미경 의원 외 14명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미경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 연월일 2018. 12.
발 의 자 장미경, 김춘남, 이선우,
강승수, 장세구, 양진오,
안주찬, 이지연, 권기만,
최경동, 안장환, 신문식,
송용자, 김재우, 박교상의원
(15명)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구미시 의정비 심의위원회(2018.11.30)에서 심의·의결하여 통보한
구미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결정내역을 반영
하기 위한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의정비 지급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2019년도는 동결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절반 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함. (안 별표 1)

연도	지급액
2019년도	월 2,199,000원
2020년도	'19년 월정수당에 '19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의 1/2 만큼 합산한 금액
2021년도	'20년 월정수당에 '20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의 1/2 만큼 합산한 금액
2022년도	'21년 월정수당에 '21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의 1/2 만큼 합산한 금액

나.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5에 따른 금액으로 각각 개정함(안 별표 2)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안 별표 2)

구 분	현 행 (단위 : 원)					개 정 안 (단위 : 원)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숙박비 (1박당)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숙박비 (1박당)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밖의 지역은 50,000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 일비 20,000원(1일당), 식비 25,000원(1일당) 변경 없음.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 (안 별표 2)

- 현 행

(단위: 미 달러화(\$))

지 급 기 준 구 분	항공임	일비	숙박료	식비	준비금		
					15일 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 이상
의 장 부의장	1등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 원	2등정액	30	145	81	130	155	180

- 개 정 안 : 국가 및 도시별로 등급 구분

(단위: 미 달러화(\$))

구분	항공운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의 장 부의장	1등석 정액	가	35	실비(상한액: 223)	107
		나	35	실비(상한액: 160)	78
		다	35	실비(상한액: 130)	58
		라	35	실비(상한액: 85)	49
의원	2등석 정액	가	30	실비(상한액: 176)	81
		나	30	실비(상한액: 137)	59
		다	30	실비(상한액: 106)	44
		라	30	실비(상한액: 81)	37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여비규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구미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등) ① 구미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1.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0,000원
2. 보조활동비: 200,000원

②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지급)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 1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구미시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별표 2의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내용은 구미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월정수당 지급기준(제3조 관련)

연도	지급금액
2019년도	월 2,199,000원
2020년도	2019년 월정수당에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의 1/2 만큼 합산하여 반영한 금액
2021년도	2020년 월정수당에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의 1/2 만큼 합산하여 반영한 금액
2022년도	2021년 월정수당에 2021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의 1/2 만큼 합산하여 반영한 금액

[별표 2]

여비 지급기준(제4조 관련)

1. 국내 여비

구 분	지급금액
의 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2. 국외 항공운임

구 분	지급금액
의장·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의 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그 밖의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구 분	지급금액
의장·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의 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비고: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따른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생략)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의정활동비: 별표 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2. 여비: 별표 5에 따른 여비 지급범위에서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3. 월정수당: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⑤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다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별표 4]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 의 회 의 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별표 5] <개정 2018. 1. 9.>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2호 관련)

1. 국내 여비

구분	준용
시·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원	

비고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 항공운임

구분	준용
시·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부의장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그 밖의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구분	준용
시·도의회 의장·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3호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시·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부의장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비고: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개정 2015.1.6.>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별표 3] <개정 2014.11.19.>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제12조제2항 관련)

구 분	항 공 운 임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1등석 정액
그 밖의 사람	2등석 정액

비고: 예산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항공운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4] <개정 2016.1.22.>

국외 여비 지급표(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가	60	실비(상한액: 471)	186
	나	60	실비(상한액: 422)	136
	다	60	실비(상한액: 271)	102
	라	60	실비(상한액: 216)	85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50	실비(상한액: 389)	160
	나	50	실비(상한액: 289)	117
	다	50	실비(상한액: 215)	87
	라	50	실비(상한액: 161)	73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40	실비(상한액: 282)	133
	나	40	실비(상한액: 207)	99
	다	40	실비(상한액: 162)	72
	라	40	실비(상한액: 108)	61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35	실비(상한액: 223)	107
	나	35	실비(상한액: 160)	78
	다	35	실비(상한액: 130)	58
	라	35	실비(상한액: 85)	49

5. 별표 1의 제2호가목 에 해당하는 사람	가	30	실비(상한액: 176)	81
	나	30	실비(상한액: 137)	59
	다	30	실비(상한액: 106)	44
	라	30	실비(상한액: 81)	37
6. 별표 1의 제2호나목 에 해당하는 사람	가	26	실비(상한액: 155)	67
	나	26	실비(상한액: 123)	49
	다	26	실비(상한액: 90)	37
	라	26	실비(상한액: 77)	30

※ 비고

1.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에 있어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앤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4)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 2)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구미시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인상에 따라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
 -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월정수당 인상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예산의 소요는 예정되나 재정의 추계는 어려움

4. 작성자 : 구미시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 조장근